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개정 2014.11.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영어영문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 따라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상기학과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호와 아래와 같다.

1.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 교과목은 전공별 교육과정 내에 있는 모든 교과목 중에서 정한다.
3. 석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전공별 사정에 따라 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출제 및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 위촉하며 부득이한 경우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5. 시험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1. TOEIC 800점 이상(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점수 유효)
2. TOEFL(iBT) 91점 이상
3.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TOEIC 750점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4.11.3)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접수 전에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4.11.3)

1. 논문지도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1.3)

2. 위원장은 학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도교수와 논문 관련 분야의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신설 2014.11.3)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본인이 제 1저자로 국내 학회 및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게재예정증명서(논문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부터 모두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4.1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부터 모두 소급적용한다.